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시행계획(안)**



2020. 8.

영 등 포 구 의 회
(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시행계획(안)

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 발의되어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(2020.6.24.)에서 의결된 바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 추진사항을 정해 조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I 법적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

II 행정사무조사 개요

- 구성일자: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(2020. 6. 24.)
- 활동기간: 2020. 6. ~ 본회의 의결시까지
- 조사범위: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31개 사업(붙임 1 참조)
- 조사방향
 - 조사는 사안별로 시차를 가지고 구분 처리
 - 각 사안은 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검토 등 부분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별·반별 운영함
 -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 확보
 - 각 사안별로 중점 조사대상을 표본 추출하여 밀도 있는 조사를 실시 후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 개선 유도

주요 조사내용

-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적법성, 적정성
-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·감독 적정 여부
- 수탁자의 각종 법령 및 조례, 지침의 의무 이행 여부
- 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
- 민간위탁 사무 운영,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

Ⅲ 세부 추진계획

조사반 편성

구 분	성 명	조사대상 사 무	사무보조 직 원	비고
1반				
2반				

※ 조사반 편성 및 사무보조 인력은 변경될 수 있음

조사기본자료 요구

- 1차 자료 요구 결과
 - 민간위탁사업 기본 현황
 - * 사업명, 위탁근거, 위탁기간 및 수탁자, 위탁사유, 내용 등 포함
 - 민간위탁 사업 기본 계획서
 - 수탁기관 선정 관련 서류 일체
 - *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계획서,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등

○ 향후 조사 자료요구

- 심화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

□ **관계부서 등 업무보고·출석 요구**

○ 대 상: 조사대상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수탁기관의 장

○ 절 차: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

○ 내 용: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

□ **현지 확인(검증)**

○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파악 및 서류 확인 등 조사 실시

○ 절 차: 위원회 의결 → 의장 경유 → 3일전까지 사실 통보

□ **조사 자문회의(교육)**

○ 일 자: 특별위원회 기간 중 1일

○ 내 용: 효율적 조사를 위한 감사 기법 등 청취

IV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

□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

□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·사후 확인

□ 문제점 발견 시 해당기관 조사 의뢰

V 행정사항

□ 영등포구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 출석 요구

□ 효율적 민간위탁사무 점검을 위한 기본 자료 숙지

- 붙임 1.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1부.
2.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절차 1부.
3. 특별위원회 조사 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영등포구 민간위탁 사무 현황

국 별	부 서 별	계	사 업 명	비고
총 계		31		
미래비전 추진단	미 래 교육과	4	근충체험학습장	
			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	
			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	
			영등포 꿈더하기학교	
	사회적 경제과	4	무중력지대-영등포	
			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	
			영등포청년건축학교	
			서울청년센터 영등포	
행 정 지원국	자치행정과	2	자원봉사센터	
			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	
보 건 소	건강증진과	1	치매지원센터	
	위생과	1	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	
복 지 국	복 지 정책과	2	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	
			영등포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	
	사 회 복지과	2	장애인사랑나눔의집	
			꿈더하기지원센터	
	보 육 지원과	2	영등포육아종합지원센터	
			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	
	아동청소년 복지과	3	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	
			다문화가족지원센터	
			청소년상담복지센터	
	어르신 복지과	7	여의도복지관	
			영등포시니어클럽	
			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	
			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	
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				
어르신복지센터및시니어행복발전센터				
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				
생 활 환경국	청소과	1	자원순환센터 선별장 관리	
안 전 교통국	교통행정과	2	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	
			자전거 수리소	

영등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절차

I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

1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

○ 민간위탁 세부내용 확정

- 위탁사무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무단위로 위탁
-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등

○ 위탁기간 결정

-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결정(조례 제10조 제2항)

※ 개별 법규에 기간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, 그에 따름

예) 사회복지시설 : 5년(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4조)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

- 공개모집 원칙(조례 제6조 제1항)
-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(수의협약 형태) 가능

2 구의회 동의

○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에 대한 구의회 동의(조례 제4조 제3항)

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절차

-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
-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

- 의안 제출 →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→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→ 상임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의결 → 집행부에 이송

3 일상감사 의뢰

○ 사업(안) 확정 20일 전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의뢰

- 근 거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상감사 규정 제4조
- 의뢰대상: 신규 위탁사업 및 재위탁 사업

4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· 심사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

- 원 칙: 공개모집(조례 제6조)
- 민간위탁의 목적 · 성질 ·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 가능
-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,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

○ 수탁기관 선정기준

-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· 기구 · 장비 · 시설 및 기술수준
-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-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○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· 운영(조례 제7조)

- 위원회 구성 : 6~9명 이내 위원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 - 위 원 장: 외부위원 중 호선
 - 위원자격
 - 영등포구의회 의원
 -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

- 공익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상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함)에서 추천한 사람
 -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- 관계공무원(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)
 -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위원회 운영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- 사업계획서 등 심사,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
- 심사내용 : 수탁기관 적격여부 검토

5 위·수탁 협약 체결

○ 위·수탁 협약서 주요내용(조례 제10조)

-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, 위탁기간,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,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,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○ 위탁기간 : 3년 이내

※ 개별 법규에 기간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, 그에 따름

예) 사회복지시설 : 5년(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4조)

○ 협약내용 공증(의무사항)

6 사무편람 승인·비치

○ 사무편람 승인·비치(조례 제15조)

- 수탁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과정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 명시
-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이 위탁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지도
-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 보완·지도

7 사후관리

○ 지도·감독 및 감사(조례 제14조, 18조)

- 지도·감독(주관부서)
 - 대 상: 수탁사무 처리현황
 - 필요 사항을 지시하거나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·정지·시정조치
 - 주관부서의 사정에 맞게 정하되 정기점검 횟수 및 날짜를 지정하여 운영
- 감사(감사담당관)
 - 대 상: 수탁사무 처리결과
 -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

○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(조례 제14조, 제16조)

- 주관부서는 지도·감독 결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조치
- 수탁기관의 일정사유 발생 시 위탁 취소 가능
 -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 -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
 -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-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8 성과평가 실시

○ 실시주기 및 시기

- 위탁기간 내 1회(최종연도),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 평가 완료
-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

II

재위탁시 민간위탁 추진절차

1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

○ 대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

- 민간위탁의 개념적 정의(수행사무의 성격 및 사무수행의 명의와 책임 소재 등) 부합 및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에 의거 재검토
- 위탁사무의 사업종료 여부 등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
- 민간위탁 이외 직영 등 기타 효율적 사무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

○ 재위탁 추진을 위한 위탁내용 등 확정

- 재위탁 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
- 위탁기간, 위탁비용 산정,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

○ 예외적 신규 민간위탁처리 기준 준용하는 경우

-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**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처리**해야 함
 - ▶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
 - ▶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
 - ▶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
 - ▶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 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

2 일상감사 의뢰

○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의뢰

- 근거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상감사 규정 제4조
- 의뢰대상: 신규 및 재위탁 사업
- 의뢰시기: 사업(안) 확정 20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 의뢰

3

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

-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(조례 제6조)
 - 재협약 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가능
-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(조례 제7조)
 - 위원회 구성: 6~9명 이내 위원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 - 심사 내용
 -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
 - 동일 수탁기관과 재위탁(재협약) 시 성과평가 후 수탁기관 적정성 심사
 -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주관부서는 성과평가 실시
 - 성과평가 결과 미흡시 재협약 추진 불가
 - 재협약 수탁기관 심사 결과 부적격시 공모절차를 통한 재위탁 절차 진행

4

재위탁 협약 체결

- 위탁기간 : 3년 이내
 - ※ 개별 법규에 기간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, 그에 따름
 - 예) 사회복지시설 : 5년(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4조)
- 재위탁 협약서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

5

사후관리 및 성과평가

- 지도·점검 및 감사 실시
- 성과평가 실시 등
 - 위탁기간 내 1회(최종연도),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 평가 완료
 -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

[붙임 3]

특별위원회 조사 서식

구 분	내 용	비고
조사대상 사무		
위탁기관		
현황		
문제점		
개선사항 (권고사항)		
기타		

조사자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

위원명:

(서명)